

세무회계저널  
제9권 제4호 2008년 12월 pp.195~222  
한국세무학회

##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심태섭\*\*

### <요 약>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즉 세 가지의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응답을 분석하여, 세무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형태를 파악하였다. 서울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개인감사반소속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대상으로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세정당국은 가산세율의 크기를 조정하였고, 부과 방법 등을 변경하여, 보다 성실한 세무신고율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가산세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에 대한 도입도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대하여 세정당국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벌금, 가산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편에서 세무조정하려는 경향, 즉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본 연구에서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Cuccia(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세무당국이 무조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벌금이나 가산세 등 경제적인 제재를 통하여 세무대리인의 성실 세무신고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제어> 세무의사결정,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가산세

\* 본 논문은 2008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 되었습니다.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tsshim@dankook.ac.kr, 031-8005-3429

논문접수일 2008년 10월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 I. 서 론

세무당국은 오랫동안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세무조사방법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필요한 인력과 시간 등의 제약으로 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세무조사와 더불어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도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세무당국에서도 가산세율의 크기를 높이는 방법과 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산세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이자, 최근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도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불성실한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검토하여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불성실한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대리인에 징계가 증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sup>1)</sup>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세무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적 수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실세무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수단 가운데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두 정책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制裁)라는 공통점이 있다.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크기가 증가한다면, 잘못된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기에 세무대리인은 보다 신중한 세무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산세가 납세자에게 부과되지만, 많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세무조정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부담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이 더 이상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도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세무당국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세무조사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가산세와 세무대리인 벌금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연구결과 결론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성실세무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가

1)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탈세를 돕는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조세일보 2008. 10.18.).

산세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효과를 다루는 연구로 본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연구가 단순한 써베이(survey) 연구로 진행되었고,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즉 세 가지의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응답을 분석하여, 세무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형태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써베이 연구를 통한 단순한 의견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하기보다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파악되었다. 오히려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무대리인이 납세자 편에서 세무조정하려는 경향을 더욱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무당국이 벌금이나 가산세와 같은 경제적인 제재수단을 통하여 세무대리인의 성실세무신고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는 데 보다 신중하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선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과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를 근거로 실제 자료수집에 사용된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 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II.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 1.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세법이 복잡하여 짐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기보다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Roberts(1998)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기존연구를 정리하여,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우선, 세무대리인의 개인적·심리적 요인으로 세무대리인의 지식, 경험, 위험선호태도 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경제적 환경요인으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벌금 등의 제재, 고객의 위험선호태도, 고객의 중요성 등을 들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에 따른 요인으로 관련 세법규정이 애매한 정도 등의 여러 요인을 들고 있다.<sup>2)</sup> 이러한 요인중 본 연구는 벌금 등의 경제적 제재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속한다.

## 2.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연구

Roberts(1998)가 제시한 여러 가지 요인가운데, 구체적으로 세정당국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거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정책적 수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세정당국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은 세무조사이며 세무조사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sup>2)</sup>

세무조사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중 가운데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 제재수단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져왔다.

Cuccia(1994)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미국의 세정당국에서 실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가 세무대리인의 공격적인 세무조정경향<sup>4)</sup>을 줄일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자격에 따라(CPA vs. Non-CPA)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효과가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았다. 세법상황이 애매한 가상적인 상황을 이용한 현장실험을 한 결과, Non-CPA의 공격적 세무조정행태는 줄어드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CPA의 공격적인 세무조정성향을 줄여들지 않았으며, 세법규정에 애매한 상황에 대하여 보다 많은 분석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향을 파악하였다.

심태섭(2004)은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세무조사가능성 및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인 사례를 작성하여 실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다만 세무조사가능성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상호작용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벌금이외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이다. 즉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통하여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려 세정당국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산세의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벌금과 가산세를 포함한 경제적 제재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론은 일치하고 있지 않다. Roberts(1998)에 따르면 실험방법을 사용한 세 연구에서는 벌금 등의 경제적 제재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두 연구에서

2) 각 요인에 대한 기존연구는 Roberts(1998)에 정리되어 있다.

3) 세무조사에 대한 연구는 Roberts (1998)의 연구에 요약이 되어 있다.

4) 세무대리인이 납세자 편에 유리하게 세무조정하려는 경향을 “공격적”이라고 표현한다. 즉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세무당국에 공격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경향을 세무대리인의 공격성(aggressiveness)으로 표현하고 있다.

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벌금 등에 대한 변수 조작이 너무 약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달리 Cuccia(1994)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공격적 의사 결정을 줄이지는 못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벌금을 포함한 경제적 제재가 세무대 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연구의 결론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에 벌금과 가산 세와 같은 경제적인 제재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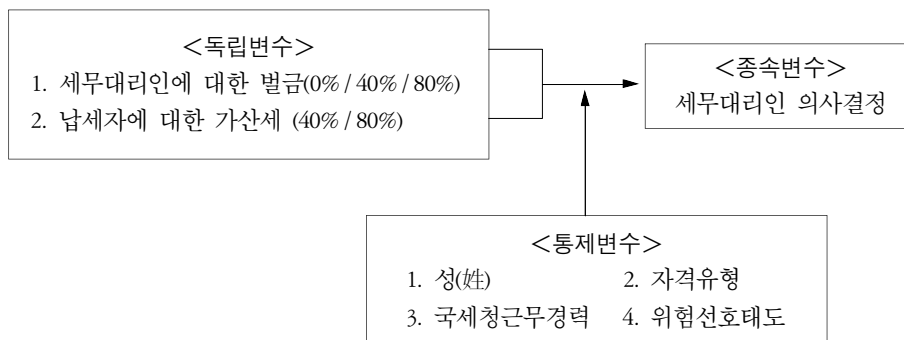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많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하기에, 가산 세는 납세자에게 부과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정책수단은 납세자의 납세준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이지만, 이에 대한 기존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I.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부과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크기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 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표 시할 수 있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그림 1>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이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 개의 수준(없는 경우 / 40% / 60%)으로 하였으며, 납세자의 가산세는 두 개의 수준(40% / 80%)으로 하였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이며,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많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간접적인 경제적 제재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결과분석할 때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통제하고자 한다.

##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에 다음 두 가지의 연구가설은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1>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가설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규정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세무사로서의 기본의무(비밀준수, 기장의무, 공무원겸임 및 영리업무종사금지 등)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탈세상당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세무사법 제12조의 2),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견책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및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교사(敎唆)한 자는 그 적용할 법조의 형기 또는 벌금의 3분의 1 까지 가중하여 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이러한 우리나라의 세무사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정을 잘못된 사유로 인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세무조정에 따른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대리인이 합리적인 이유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250 (IRC §6694(a)), 그리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0 (IRC §6694(b))의 벌금을 세무대리인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최근 납세자의 탈세를 유도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조세일보 2008.10.9), 앞으로 정책당국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효과를 연구가설 1을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연구에서는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Cuccia(1994)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부과는 세무대리인의 공격적인 의사결정성향을 줄이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1에 대하여 그 영향의 방향성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2를 수립하였다.

<가설 2>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다. 세무당국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정당국도 2006년도의 세법개정시 여러 세법에 분산되어 있던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였으며, 가산세 세율 및 가산세의 부과방법을 개정하는 등 가산세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개선노력에 비추어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산세는 납세자에 대한 벌금이나, 많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의 크기가 커지면,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부담하는 가산세의 크기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증가하면서 고객이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계속하여 세무조정을 맡겨야 하는 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많은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세무조정으로 인한 가산세의 부담에 대하여, 세무대리인과 고객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에 따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 2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도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같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성격을 갖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에 대한 기존연구와 같이, 그 영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2에 대하여도 그 방향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과도 추가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선 분석한 두 변수인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부과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이 두 변수가 결합하여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두 변수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방법의 개요

본 연구는 실제 세무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는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한 실험실 실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실험에 쓰일 가상적인 사례를 설문지로 작성하고, 이러한 설문지를 세무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2. 가상적 사례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적인 사례를 작성하여, 이를 응답자에게 응답하게 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 대한 가상적인 사례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환근(1998), 박춘래·김종원(2002) 그리고 심태섭(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상적인 사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에 총 세 가지의 가상적 사례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가상적 사례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제 세무대리인의 납세의사결정을 보다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 사례의 내용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사례의 내용은 부록의 <설문지>를 참조).

#### 가. (주)한강 사례

이 사례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세무문제이다. 소득세법 예규에서는 사용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만을 특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을 추천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소득46011-3619, 1995.9.22). 그러나 모든 장학금 수령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 당 장학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 사례는 장학금수령자 모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가상적인 상황에서, 이 장학금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대한 납세의사결정을 응답자가 하도록 하였다.

#### 나. (주)해외통신 사례

이 사례는 해외파견도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난 근로자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와 관련된 사례이다. 관련 법인세법 예규에서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만이 국외근로수당에 해당되어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비해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료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46013-3982. 1998.12.19). 그러나 해외에서 파견근무하는 도중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어 그 곳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난 경우, 파견근무기간동안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에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국외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응답자에게 요구하였다.

#### 다. 한일철공소 사례

이 사례는 개인사업자가 기계반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판단을 알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그러나 기계설비가 노후되었거나 기능상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유로 기계를 대체한 경우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기계의 폐기가 아닌 기계반품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 사례와 같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기계반품에 따른 손실에 대해 응답자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를 알아보았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 후 실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사 두 명에게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세무문제의 대상 금액 및 표현문구 등을 수정하여 최종사례를 확정하였다.

### 3. 처리변수(독립변수)

본 연구의 처리변수(독립변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크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변수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 가.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무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없다. 이에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가상적인 사례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된 내용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부인이 될 경우, 부인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의 일정비율을 세무대리인에게 부과하는 형태로 세무대리인의 벌금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벌금의 크기는 세 가지 수준(없는 경우, 미납부세액의 40%, 그리고 미납부세액의 80%)으로 가정하였다.

실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기술하였다(한일철공소의 경우). 그리고 벌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위의 항목에 대해 귀하가 세무신고를 한 내용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부인될 경우,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와는 별도로, 부인된 금액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40%(혹은 80%)**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이 귀하에게 추가로 직접 부과됩니다.**

#### 나.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되고 있는 가산세의 형태를 참조 본 연구의 가산세 형태를 정하였다. 그리고 가산세 수준은 현재 가산세율중 가장 높은 40%와 80%의 두 가지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실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기술하였다(한일철공소의 경우).

위의 항목에 대해 귀하가 세무신고를 한 내용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부인될 경우, 부인된 금액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40%(혹은 8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납세자인 한일철공소에** 부과됩니다.

####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위의 처리변수 이외에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성(姓), 연령, 세무업무 경력, 세무대리인 자격, 국세청 근무경력과 사무실 형태를 측정하였다.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위험선호태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응답자의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Young(1985)이 사용하였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귀하는 현재 복권 한 장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권이 당첨될 경우 1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즉 0원). 이러한 복권의 가격이 5,000원일 경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최소한 몇 %가 되어야 귀하는 이 복권을 구입하시겠습니까? : ( ) % (0%부터 100%사이)”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자의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통제변수중에서 결과분석시 종속변수인 응답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한 후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5. 타 변수에 대한 통제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변수중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닌 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제하였다.

### 가. 고객의 중요성

고객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기존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Roberts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도 모든 사례에서 언급된 고객을 매우 중요한 고객으로 가정하는 방식으로 한정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즉 한일철공소 사례의 경우 “대표이사인 丁씨는 그간 귀하에게 많은 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등 귀하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라는 방식으로 본 사례의 고객을 기술하였다.

### 나. 고객의 태도

세무조정을 의뢰한 고객이 문제가 되는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세무조정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공격적인 세무조정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한정하여 이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즉 한일철공소 사례의 경우 “丁씨는 위의 사항에 대해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다소의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丁씨에게 **유리**한 세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고객의 태도를 기술하였다.

### 다. 세무조사가능성

납세순응도 혹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변수가 세무조사가능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즉 한일철공소 사례의 경우 “최근 철강업의 호황으로 한일철공소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라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 라. 문제의 순서

본 연구에서는 총 세 가지 사례가 응답자에게 주어지기에, 사례의 순서에 따라 응답자의 응답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sup>5)</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순서를 달리하여 응답자에게 제공하였다. 즉 독립변수의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문제의 수준이 다른 총 6가지(3×2)의 형태로 설문지를 마련하여, 문제순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6.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에 대하여 세무대리인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고객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를 11점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를 1점으로 하도록 측정하였다.<sup>6)</sup> 이 측정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

5) 이러한 영향을 질문순서효과(question order effect)라 한다(김근배 2005, 226).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세무당국에 공격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기에,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세무대리인의 공격성(aggressiveness)으로 표현하고 있다.

## 7.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4쪽으로 되어 있다.<sup>7)</sup>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가상의 사례를 각 페이지당 하나씩 기술하였다(부록의 설문지 참조). 한 응답자가 받는 설문지에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벌금과 가산세의 크기는 모든 사례에서 동일하기에, 본 연구는 집단간 실험방법(between subject design)으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 V. 자료분석

## 1. 자료수집내역과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는 실제 세무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세무사와 개인감사반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간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세무대리인으로 국한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의 개인감사반의 공인회계사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한 결과,<sup>8)</sup> 총 616명의 공인회계사명단을 확보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서울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세무사 명단을 파악한 결과 휴업자 등 주소가 불분명한 것을 제외하고 총 3,427명의 명단이 파악이 되었다. 이들중 체계적 표본추출방법(systematic random sampling)을 적용하여, 가나다 순서로 된 세무사의 명단에서 5칸 마다 한 명씩 선정하여 이미 선정된 공인회계사와 동일한 총 616명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서 세무대리인으로 개업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총 1,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의 주소가 인쇄된 회신용 봉투와 함께 설문에 대한 응답을 부탁하는 메모를 부착하였다.<sup>9)</sup> 연구자

6) 일반적으로 5점 척도가 많이 쓰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척도(7점 혹은 9점 척도 등)를 사용할 수 있다 (Trochim 2001, 146). Cuccia(1994)의 연구에서 11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7) 실제 설문지는 A3용지의 양면에 인쇄하여, A4크기의 4쪽으로 구성하였다.

8) 이러한 조건에 맞는 공인회계사의 명단과 주소는 [www.taxnet.co.kr](http://www.taxnet.co.kr)을 통하여 구하였다.

9) Nelson(1996)은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응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설문지의 표지부분에 설문의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응답자가 얻을 수 있는 이로운 등을 언급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자의 주소가 인쇄된 회신용 봉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의 주소가 인쇄된 발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2008년 5월 초에 발송하였다.

발송된 설문지가운데 6월 말까지 반송된 설문지는 총 83매이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138매였다(회수율 : 11.20%)였다.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비교적 충실하다고 판단되어 모든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된 설문지 응답자 중 대부분이 남자(97.1%)이었으며, 평균나이는 52.4세였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71명(51.8%), 세무사 66명(49.2%)으로 거의 비슷한 수의 응답자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평균 세무업무 실무경력은 21.63년으로 비교적 긴 기간이었다. 그리고 국세청 근무경력이 있는 응답자는 49명(총 응답자의 35.5%)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국세청 근무기간은 19.27년 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89.7%), 법인형태에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총138명의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sup>주)</sup>

| 구 분           |               | 응답자(명) | 비율(%) |
|---------------|---------------|--------|-------|
| 성 별           | 남 자           | 134    | 97.1  |
|               | 여 자           | 4      | 2.9   |
| 자격유형          | 공인회계사         | 71     | 51.8  |
|               | 세무사           | 66     | 49.2  |
| 나 이           | 39세 이하        | 20     | 15.6  |
|               | 40세 이상~49세 이하 | 36     | 28.2  |
|               | 50세 이상~59세 이하 | 34     | 26.5  |
|               | 60세 이상        | 38     | 29.7  |
| 세무업무<br>실무경력  | 9년 이하         | 25     | 19.4  |
|               | 10년 이상~19년 이하 | 30     | 23.2  |
|               | 20년 이상~29년 이하 | 34     | 26.4  |
|               | 30년 이상        | 40     | 31.0  |
| 국 세 청<br>근속기간 | 무경력자          | 86     | 63.7  |
|               | 9년 이하         | 4      | 3.0   |
|               | 10년 이상~14년 이하 | 14     | 10.3  |
|               | 15년 이상~19년 이하 | 5      | 3.7   |
|               | 20년 이상~24년 이하 | 10     | 7.4   |
|               | 25년 이상        | 16     | 11.9  |
| 사 무 실<br>형 태  | 개인사무실         | 122    | 89.7  |
|               | 법 인           | 12     | 8.8   |
|               | 기 타           | 2      | 1.5   |

주 :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를 각 독립변수의 수준별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각 집단별로 응답횟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독립변수 수준별 회수 현황

| 가산세 \ 벌금 | 0%  | 40% | 80% | 합 계  |
|----------|-----|-----|-----|------|
| 40%      | 27매 | 17매 | 24매 | 68매  |
| 80%      | 23매 | 22매 | 22매 | 67매  |
| 합 계      | 50매 | 39매 | 46매 | 135매 |

## 2. 종속변수의 기술적 통계량

본 연구의 응답자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상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기술적 통계량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각 사례별로 그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종속변수의 기술적 통계량

| 구 분     | 평 균  | 표준편차 |
|---------|------|------|
| (주)한 강  | 5.76 | 3.38 |
| (주)해외통신 | 6.04 | 4.02 |
| 한일철공소   | 6.34 | 4.00 |
| 전 체     | 6.04 | 2.53 |

주 : 1 - 고객에게 불리, 11 - 고객에게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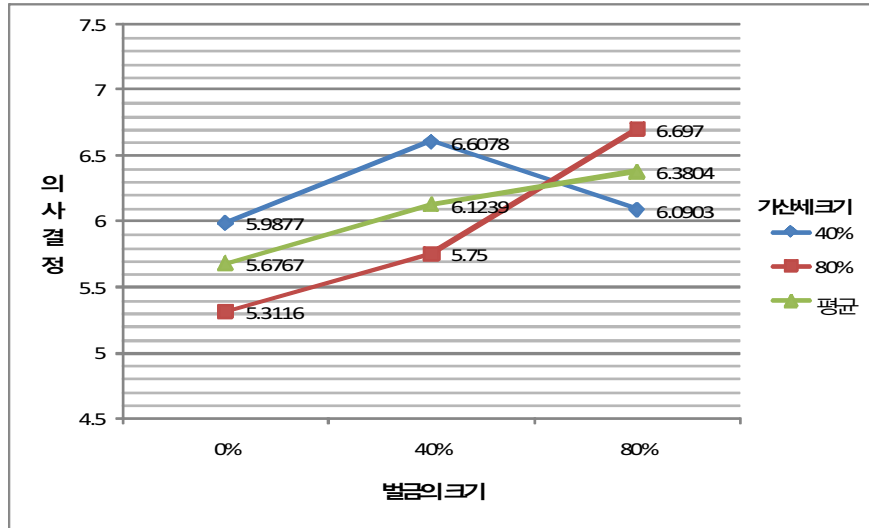
## 3. 예비분석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에 앞서, 응답자의 응답경향을 알기 위하여 예비분석을 먼저 하였다.

### 가. 전체 응답의 평균에 대한 예비분석

본 연구 응답자의 전체 응답의 평균을 가산세와 벌금의 크기별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전체 응답의 평균에 대한 예비분석



주 : 1 - 고객에게 불리, 11 - 고객에게 유리

<그림 2>에서 보듯이 평균적으로 벌금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응답자가 고객의 편에서 응답하는 성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응답자인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이 벌금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성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을 가산세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산세가 낮은 경우(40%)에서는 벌금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벌금이 40%인 경우에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이 증가하였으나, 40%에서 80%로 증가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가산세의 크기가 80%인 경우는 벌금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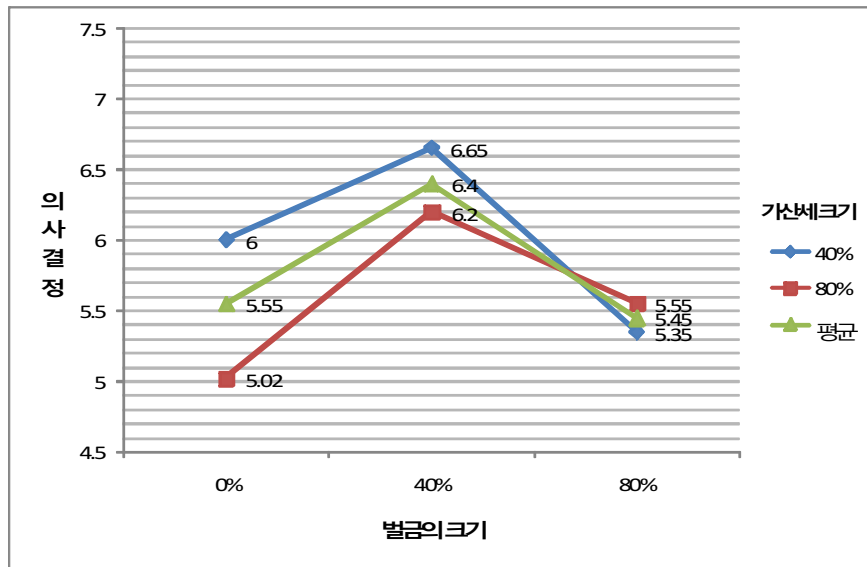
가산세의 경우, 높은 가산세율(80%)인 응답자의 경우가 낮은 가산세(40%)인 경우의 응답자에 비하여 공격적인 성향이 적었으나, 벌금이 80%인 경우에는 이러한 성향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성향은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과 가산세가 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주)한강에 대한 예비분석

이 사례는 종업원이 수령한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세무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벌금과 가산세의 크기별 응답자의 응답성향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주)한강의 응답에 대한 예비분석



주 : 1 - 고객에게 불리, 11 - 고객에게 유리

(주)한강에 대하여는 응답자들은 벌금의 크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40%인 경우에는 그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벌금이 80%인 경우에는 공격적인 성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산세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가산세가 높은 경우(80%)인 경우가 낮은 가산세(40%)의 응답자에 비하여 덜 공격적임을 보였다. 벌금이 높은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다.

#### 다. (주)해외통신에 대한 예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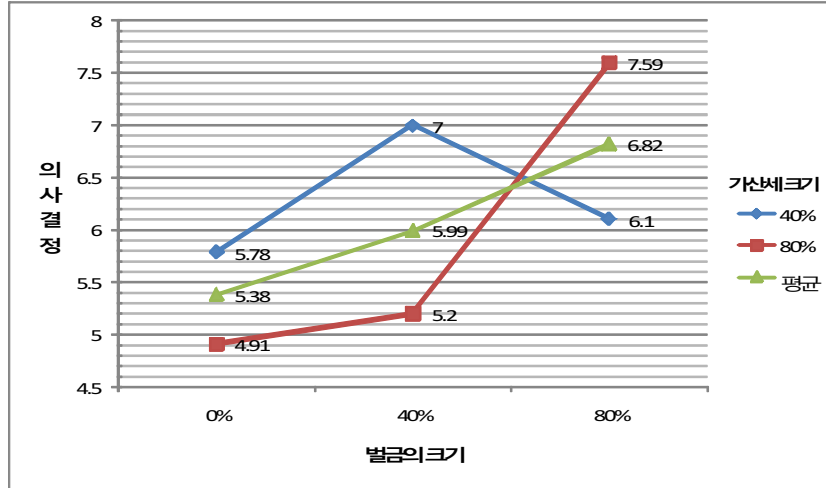
이 사례는 해외파견도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난 근로자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지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 사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성향은 <그림 4>와 같다.

(주)해외통신에 대한 응답성향은 전체 평균의 응답성향과 비슷하였다. 즉 가산세가 높은 경우(80%)에는 낮은 경우(40%)보다 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벌금이 높은 경우(80%)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반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전체적으로 벌금의 크기를 증가함에 따라, 응답자의 공격적인 세무조정성향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산세가 높은 경우에 더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성향은 벌금의 부과가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주)해외통신의 응답에 대한 예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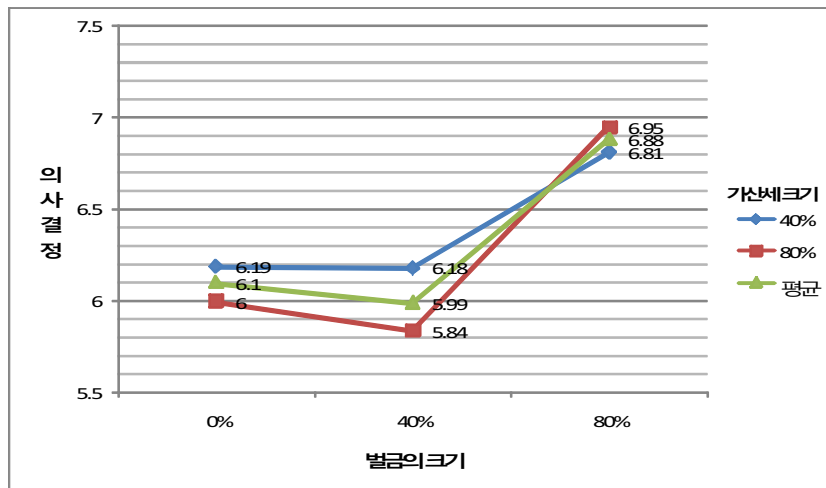


주 : 1 - 고객에게 불리, 11 - 고객에게 유리

#### 라. 한일철공소에 대한 예비분석

이 사례는 개인사업자가 기계반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지의 여부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판단을 알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앞의 두 사례와 달리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정이 다. 이 사례에 대한 벌금과 가산세 크기에 따른 응답자의 응답성향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한일철공소의 응답에 대한 예비분석



주 : 1 - 고객에게 불리, 11 - 고객에게 유리

<그림 5>에서 보면, 벌금의 수준이 높은 경우(80%)에는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이 오히려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산세의 크기에 따라서 응답성향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 4. 가설검정

본 연구는 두 독립변수-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별로 두 개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통제하였다. 이러한 변수로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성(남/녀), 자격유형(공인회계사/세무사), 국세청근무경력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를 선택하였다.<sup>10)</sup>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공분산분석 결과

| Source |        | 자유도 | 평균제곱합   | F값     | p값      |
|--------|--------|-----|---------|--------|---------|
| 전체평균   |        |     |         |        |         |
| 주 효 과  | 벌 금(A) | 2   | 5.092   | .845   | .432    |
|        | 가산세(B) | 1   | 1.259   | .209   | .648    |
| 상호작용효과 | A*B    | 2   | 10.418  | 1.730  | .182    |
| 공 변 량  | 성(姓)   | 1   | 1.760   | .292   | .590    |
|        | 자격유형   | 1   | 1.218   | .202   | .654    |
|        | 국세청경력  | 1   | 22.499  | 3.736  | .056*   |
|        | 위험회피태도 | 1   | 6.564   | 1.090  | .299    |
| (주)한강  |        |     |         |        |         |
| 주 효 과  | 벌 금(A) | 2   | 8.923   | .662   | .518    |
|        | 가산세(B) | 1   | 2.405   | .178   | .674    |
| 상호작용효과 | A*B    | 2   | 5.096   | .378   | .686    |
| 공 변 량  | 성(姓)   | 1   | .756    | .056   | .813    |
|        | 자격유형   | 1   | 11.519  | .854   | .357    |
|        | 국세청경력  | 1   | 16.527  | 1.226  | .270    |
|        | 위험회피태도 | 1   | 169.403 | 12.566 | .001*** |

10) 응답자의 위험선호 태도는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한 항목에 대한 응답이 50%보다 크다고 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형, 50%인 경우는 위험중립형 그리고 50%이하인 경우에는 위험선호형으로 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4〉 공분산분석 결과 (계속)

| Source  |        | 자유도 | 평균제곱합  | F값    | p값     |
|---------|--------|-----|--------|-------|--------|
| (주)해외통신 |        |     |        |       |        |
| 주 효 과   | 벌금(A)  | 2   | 17.276 | 1.063 | .349   |
|         | 가산세(B) | 1   | 1.040  | .064  | .801   |
| 상호작용효과  | A*B    | 2   | 32.889 | 2.023 | .137   |
| 공 변 량   | 성(姓)   | 1   | .796   | .049  | .825   |
|         | 자격유형   | 1   | .000   | .000  | .999   |
|         | 국세청경력  | 1   | 3.729  | .229  | .633   |
|         | 위험회피태도 | 1   | 4.716  | .290  | .591   |
| 한일철공소   |        |     |        |       |        |
| 주 효 과   | 벌금(A)  | 2   | 7.090  | .441  | .644   |
|         | 가산세(B) | 1   | .634   | .039  | .843   |
| 상호작용효과  | A*B    | 2   | 4.686  | .292  | .747   |
| 공 변 량   | 성(姓)   | 1   | 16.019 | .997  | .320   |
|         | 자격유형   | 1   | .005   | .000  | .985   |
|         | 국세청경력  | 1   | 67.741 | 4.218 | .042** |
|         | 위험회피태도 | 1   | 9.902  | .617  | .434   |

주1) \*, \*\*, \*\*\*는 각 각 유의수준 10%, 5% 및 1%에서 유의적임.

주2) 전체평균은 세 가지 사례의 응답을 단순평균한 것임.

<표 4>의 공분산분석결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수립한 두 가지 가설은 채택할 수가 없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도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에, 세정당국에서는 그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크기를 변경하는 등의 세무당국의 정책적 노력은 세무대리인의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그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에서 보면 일부 통제변수가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체적인 응답의 평균과 한일철공소 사례에서는 국세청근무경력에 따라 응답자간의 응답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주)한강의 경우는 응답자의 위험선호태도에 따라 응답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세정당국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성실한 세무조정을 요구할 경우, 참조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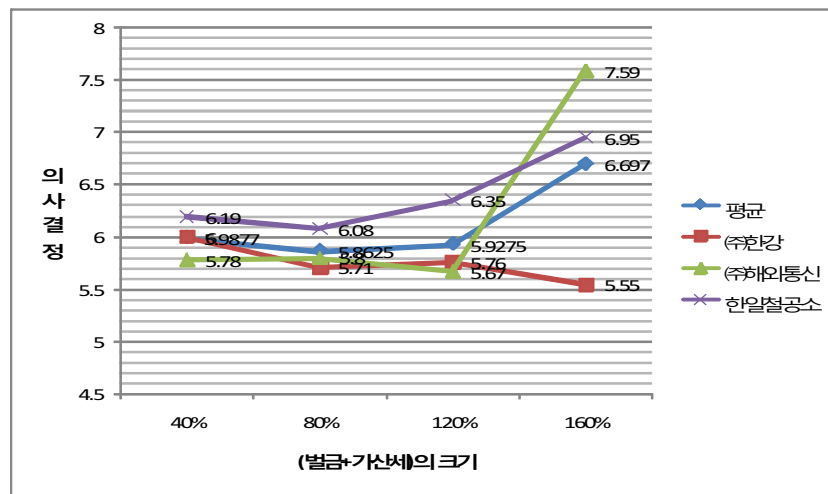
할 정책변수로 생각된다. 특히 국세청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경력이 짧아질수록 보다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향후 세무대리인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시 이러한 성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5. 추가분석 : (벌금+가산세)의 크기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별개의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도 간접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부적절하게 세무조정을 하여 납세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약의 철회 등 결과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크기를 합하여, 이 두 변수의 합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계적인 검증을 하기 전에 (벌금+가산세)의 크기에 따른 각 사례별 응답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벌금+가산세)별 응답에 대한 분석



주) 1 - 고객에게 불리, 11 - 고객에게 유리

<그림 6>에서 보면, 전체 응답자의 평균의 경우 (벌금+가산세)의 크기가 120%이하인 경우의 응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크기가 160%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응답은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가지 사례중 (주)해외통신과 한일철공소의 응답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한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은 (벌금+가산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벌금+가산세)의 크기가 120%이하인 경우(40%, 60%, 120%)와 160%인 경우로 응답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간에 응답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t 검정을 하였으면,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sup>11)</sup>

<표 5> t 검정 결과

| Source  |         | 평균     | t값       | p값     |
|---------|---------|--------|----------|--------|
| 전 체 평 균 | 120% 이하 | 5.9189 | - 1.324  | .188   |
|         | 160%    | 6.6970 |          |        |
| (주)한 강  | 120% 이하 | 5.80   | .285     | .776   |
|         | 160%    | 5.55   |          |        |
| (주)해외통신 | 120% 이하 | 5.74   | - 1.9904 | .048** |
|         | 160%    | 7.59   |          |        |
| 한일철공소   | 120% 이하 | 6.21   | - .774   | .445   |
|         | 160%    | 6.95   |          |        |

주1)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임.

<표 5>에 의하면 전체평균에서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두 집단간의 응답에는 차이가 있었다. (벌금+가산세)의 크기가 큰 경우의 집단이 오히려 적은 집단보다 공격적인 응답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해외통신과 한일철공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주)해외통신의 경우에는 두 집단간의 응답의 차이가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이와 같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와 같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수단의 크기가 강해질수록 세무대리인의 응답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을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다. 즉 Cuccia(1994)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실험을 하였다. 우선 Cuccia는 심리적 저항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에 따라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소에 대하여 보다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보다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보다 중요시 여기며,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의사결정하려는 성향이 비전문가에 비하여 강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같은 위협하에서 공인회계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은 보다 공격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상의 사례에 의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공인회계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

11)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비모수통계방법인 Mann-Whitney U 검정도 동시에 한 결과, <표 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해외통신(p=.05)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에 대한 벌금의 부과는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의 공격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Slemrod et al.(2001)에서는 일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고문구를 담은 세무당국의 편지가 납세자의 실제 세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실제 세무신고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전년도의 신고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자의 경우 세무신고 전에 이미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나름대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예상하여 신고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결론을 추정하였다. 또한 심태섭(2004)에서도 세무대리인의 벌금도입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에게 벌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의 공격적인 성향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도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부과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같은 경제적 제재수단은 세무당국에서 바라는 바와 같이 공격적인 세무조정성향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수단을 수립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즉 세 가지의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응답을 분석하여, 세무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형태를 파악하였다. 서울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개인감사반소속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대상으로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세정당국은 가산세율의 크기를 조정하였고, 부과 방법 등을 변경하여, 보다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가산세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에 대한 도입도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대하여 세정당국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벌금, 가산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편에서 세무조정하려는 경향, 즉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본 연구에서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Cuccia (1994) 등 기존연구의 결과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조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벌금이나 가산세 등 경제적인 제재를 통하여 세무대리인의 성실 세무신고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수단을 활용하는데 보다 신중하여야 함을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이 다양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서울지역에 있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에 대한 응답율이 낮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제한된 수의 가상적인 상황을 이용한 연구이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와 같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수단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써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근배. 2005. 「의사결정을 위한 마케팅조사론」. 무역경영사.
- 박춘래 · 김종원. 2002. 세무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 89 - 109.
- 심태섭. 2004.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3권 제1호 : 297 - 320.
- 이환근. 1998.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험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조세일보. 2008. 10.18. “징계 받은 세무사 · 회계사 5년동안 17배 증가.
- Cuccia, A. D. 1994. The effects of increased sanctions on paid preparers : Integrating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 (1) : 41 - 66.
- Nelson, T. S., 1996. Survey Research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in *Research Methods in Family Therapy*, edited by D.H. Sprenkle and S. M. Moon. New York, NY : The Guilford Press.
- Roberts, M. L. 1998. Tax Accounts' Judgement/Decision - Making Research : A Review and Synthesi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 (1) : 78 - 121.
- Slemrod, J., Marsha Blumenthal, and Charles Christian. 2001. Taxpayer response to an increased probability of audit : Evidence from a controlled experiment in Minneso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 (3) : 455 - 83.
- Trochim, W. M. K. 2001. *The Research Methods Knowledge Base* (2nd ed.). Cincinnati, OH, Atomic Dog Publishing.
- Young, S. M. 1985. Participative Budgeting : The Effects of Risk Aversion and Asymmetric Information on Budgetary Slack.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 (2) : 829 - 842.

## 부록 : 설문지

### 사례 1 (주)한강

**[내용]** 한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甲씨의 장남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甲씨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주)한강으로부터 1년간 학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주)한강은 총 20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수령자 총 20명중 10명만이 (주)한강 종업원의 자녀였으나, 나머지 10명은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관련 세법 규정]**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예규에서는 사용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만을 특정 하여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을 추천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처럼 모든 장학금 수령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 위 장학금이 甲씨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강의 경리담당자는 위의 장학금 전액을 甲씨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 등을 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유형]** (주)한강은 귀하에게 당年度の 세무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주)한강의 대표이사는 그 간 귀하에게 많은 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등 귀하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주)한강의 대표이사는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리담당자의 생각대로 납세자인 甲씨에게 유리한 세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강은 소비성 서비스업종이라 최근 (주)한강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산세]** 위의 항목에 대해 귀하가 세무신고를 한 내용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부인될 경우, 부인된 금액에 대한 **미납부원천징수세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납세자인 (주)한강**에 부과됩니다. 또한 위의 항목에 대해 귀하가 세무신고를 한 내용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부인될 경우,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와는 별도로, 부인된 금액에 대한 **미납부원천징수세액의 80%**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이 귀하에게 추가로 직접 부과됩니다.**

#### ❖ 응답 : 귀하의 의사결정

귀하는 위의 장학금을 甲씨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하실 것인지를 아래의 1~11사이의 **한 곳에 표시(○ 또는 V)**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11= 귀하가 위의 장학금을 甲씨의 과세소득에서 “확실히 제외하겠다”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른 세무조정)이며, 1=“확실히 포함시키겠다” (회사의 요구와는 반대인 세무조정)를 의미함)

| 확실히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겠다<br>(甲에게 불리)                                                                                                                                                                                                                                                     |   |   |   |   |   | 확실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겠다<br>(甲에게 유리)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div style="width: 45%; border-bottom: 1px solid black;"></div> <div style="width: 10%; border-bottom: 1px solid black;"></div> <div style="width: 45%; border-bottom: 1px solid black;"></div> </div> |   |   |   |   |   |                              |   |   |    |    |  |

※ 이하의 사례에는 사례내용을 제외하고는 위의 사례와 유사하기에 사례의 내용만 소개함※

### 사례 2 (주)해외통신

**[내용]** (주)해외통신은 급증하는 동남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선 해외하청회사의 기술 지도를 위해 乙씨를 싱가포르에 파견하였고, 2개월 후 별도 팀이 파견되어 해외현지법인인 (주)Asia-Telecom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미 현지에 나가 있는 乙씨를 (주)Asia-Telecom의 주재원으로 인사발령을 내어, 乙씨는 계속하여 싱가포르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세법 규정]** 관련 세법의 예규에서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만이 국외근로수당에 해당되어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乙씨의 경우처럼 해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도중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어 그 곳에 주재원으로 발령이 된 경우 파견근무기간동안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주)해외통신의 경리담당자는 위의 급여를 乙씨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급여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 사례 3 한일철공소

**[내용]** 丁씨가 운영하는 한일철공소에서 구입한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매번 제작사와 함께 수리를 해 보았지만 완전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기계를 제작사측과 협의하여 당 기계의 취득가액(4,000만원)중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3,000만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당 기계를 제작사가 회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             |            |          |            |
|-------------|------------|----------|------------|
| (차) 미지급금    | 30,000,000 | (대) 기계장치 | 40,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4,250,000  |          |            |
| 잡손실(기계반품손실) | 5,750,000  |          |            |

기계를 반품한 지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丁씨는 반품한 기계를 대체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입의사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관련 세법 규정]** 현행 관련 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가 노후되었거나 기능의 상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유로 기계를 대체한 것으로 인한 경우,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예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법은 위 사례와 같은 기계반품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한일철공소의 경리담당자는 위의 손실을 모두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on Tax Reporting Decision

Tae Sup Shim\*

— <Abstract>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on tax reporting decisions of Korean tax preparers. The two kinds of penalty, the penalty on tax preparers and the penalty on tax payers, were included in this paper. I manipulated three levels of the tax preparer penalty, and two levels of tax payer penalty, respectively. To know the effects of these penalties, I used a 3×2 experiment design using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four ambiguous tax scenarios. The questionnaires were sent to Korean tax preparers in Seoul. Each subject was asked to indicate that they would report the tax issue in the manner favorable to their clients. Based on the data analysis, the subjects tend to be more aggressive when the level of these two penalties increased. However, the penalties of this study did not affect significantly the reporting decisions of the subjects. This means that the Korean tax administration is more prudent in adopting tax prepare penalty or in increasing penalty rate.

<Key words> Tax compliance, Tax preparer penalty, Penalty rate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